

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1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1. .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폐지에 따라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등에게 체육특기자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

2. 주요내용

-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특기자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.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5. 예산수반 사항: 덧붙임(비용추계서)

6. 관계법령 발췌서: 해당 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 기간: 2025. 12. 4.~2025. 12. 24.(21일간)
- 나. 의견 내용: 해당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-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사항 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 동의

9. 참고사항: 해당 없음

10. 관련부서: 해당 없음

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특기자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당시 메달을 획득하였으나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2025년 1월 1일 이후 메달을 획득한 자에 한한다.

부서명		체육진흥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체육진흥과장 강 학
	팀장 직위 · 성명	체육정책팀장 조 일 수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오 수 민 (031-790-5023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포상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3조(포상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도 단위 이상의 대회 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등에 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 특기자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「하남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13조 제2항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메달을 획득한 선수 등에게 지급하는 체육특기자 장학금 또는 포상금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도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장학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선수 등
- 2022~2024년 지급현황 및 2025년 포상금 신청자 (단위: 천원)

구 분	총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총 지급액 (평균액)	138,862 (34,716)	29,465	33,599	45,719	30,079
지급대상	321명	92명	66명	92명	71명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총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
장학금 또는 포상금 지급 시비	173,580	34,716	34,716	34,716	34,716	34,716
지급대상	400명	80명	80명	80명	80명	80명

※ 4개년 지급 평균액 및 인원

다. 재원조달방안: 2026년 일반회계로 편성 예정

- 시비 자체 조달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: 해당 없음

4. 작성자: 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장(강학)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연도 (2026년)	2차연도 (2027년)	3차연도 (2028년)	4차연도 (2029년)	5차연도 (2030년)	계
세 출		34,716	34,716	34,716	34,716	34,716	173,580
포상금 지급		34,716	34,716	34,716	34,716	34,716	173,580
재원 조달		34,716	34,716	34,716	34,716	34,716	173,580
의존 재원	소 계	-	-	-	-	-	-
	보조금	-	-	-	-	-	-
	지방교부세	-	-	-	-	-	-
		-	-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34,716	34,716	34,716	34,716	34,716	173,580
	지방세	34,716	34,716	34,716	34,716	34,716	173,580
	세외수입	-	-	-	-	-	-
		-	-	-	-	-	-
지방채		-	-	-	-	-	-
기 금		-	-	-	-	-	-
공기업 특별회계		-	-	-	-	-	-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-	-	-	-	-	-